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8년 1월 24일 (수)	문의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

산재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1.24.(수)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경향신문사 빌딩)

< 회견순서 및 발언 >

1) 취지 설명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오산시 환경미화원)

2) 현장발언

- 사용우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여수시 환경미화원)
- 서울시 금천구청 용역 환경미화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시흥시 환경미화원)

4) 질의응답

※ 청와대 고발장 전달식

이선인 민주일반연맹위원장(원주 용역 환경미화원)

김시광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안양용역 환경미화원 외 현장 노동자들)

<책임은 없고, 대책도 8년 전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이 주장한 요구의 일부만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대책을 내놓은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적폐 관료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243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무대책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2015년 1월 ~ 2017년 6월 까지 돌아가신 15명의 환경미화원들의 명복을 빌며, 재해를 입은 수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지난 1월 17일에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가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환경미화원은 위험한 직종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통계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보다 산재사망률이 더 높다. 산업재해건수는 연간 1000여건에 이르며 2010년 산업재해율은 2.9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인 0.69%보다 높고, ‘위생 및 서비스업’의 산업재해율 1.27%보다도 높다.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며,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 달에 한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엄중함에도 정부대책은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광주에서 2주 사이에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다. 우리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마련을 정부에게 수년째 촉구했으나 그동안 외면해왔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지자체도 생활폐기물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사용자의 모범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다. 2010년 우리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쉴 권리라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 0.7%, 직영미화원 재해율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이 16.8%로, 전체 산재율 보다 직영미화원은 10배가 높고 민간위탁 미화원은 무려 24배에 달하는 실상을 고발하며 민간위탁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011년 살인무기로 악명 높은 청소차량 개선¹⁾을 위해 탑승용 보조발판 제거, 배기가스배출구 측면변경, 후방카메라 설치와 차량 당 최소 3인 1조 작업의무화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지난 8년간 수 십 명의 미화원이 죽었고, 수 천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이전 정부와 지자체는 수수방관하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1) 2010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의 작업안전수칙을 입수하여 홍희덕 의원실과 함께 번역 배포함. 여기에 작업안전수칙 제정과 청소차 배기구 측면, 긴급정지장치, 후방카메라등을 확인하였음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임에도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제외시킨 것이다.

지난 16일에 발표한 정부대책은 청소차안전기준설정과 매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법제화와 안전장비 설정과 착용의무화,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과 교육강화로 요약된다. 우리 요구가 9년 만에 일부 수용됐으니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선뜻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불완전함보다는 그동안 참혹하게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재발생의 주요원인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민간용역업체의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한 민간위탁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역업체 배불리기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과 혈세낭비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대적인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처우를 직접고용 노동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간접고용의 고착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 시 비용이 많이 들어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직무급모델’을 들고 나온 노동부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예방 해법은 간명하다. 2018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면 된다.

정부가 뜬금없이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들고 나왔다. 돈이 없어서 수 십 명이 죽고 수 천 명이 다쳤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는 비용을 이야기한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서 수 십 명이 죽었다. 살인의 책임이 종량제봉투에 있다는 것인가? 산업재해로 21조의 손실을 본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뭐란 말인가? 환경미화원의 사망을 종량제봉투가격 인상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문제에서 정부·지방정부는 사용자다. 환경미화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할 문제다. 백번 양보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협의체엔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없다. 환경미화원 작업선진화 방안 논의기구에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의미다.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 및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성하지 않고 있다. 부득이 우리는 가장 최근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고양시(최성시장)를 비롯한 243명 시장·군수·구청장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 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행안부, 노동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도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판단되지만 적폐관료, 안전불감증 관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바로잡고, 책임지지 않는 이들 관료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관들에게 요구한다.

환경미화원 안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가면서 우선 즉각 조치할 것은 ‘작업표시등, 후방카메라, 배기가스배출 위치변경, 긴급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 당 3인1조 작업 의무화’ 다. 대부분의 공사차량들도 노란화살표 작업등은 다 달려 있고, 후방카메라는 노조가 있는 곳은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가스 배출구 변경과 긴급제동장치는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차량과 기계 등의 안전장치 의무화, 보호장구 등이 포함된 <표준안전작업규정 제정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산업안전위원회> 구성하고,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도로보수, 하수 준설, 보건, 급식, 행정 등 업종 및 업무별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십만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하여 시군구 영세노동자의 안전보장까지 챙기는 정부, 지방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민간위탁의 전면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청소민간위탁을 직영화하면 가짜미화원, 계약관련비리, 채용비리 등 온갖 부정부패의 해결은 물론 연간 3천2백억원씩 낭비되는 시민 혈세로 연봉 5천만원 환경미화노동자 6,400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20%가까이 충원되는 것이다. 근무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의 근본 해답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뿐이다. 모범 사용자로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보다 환경미화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죽음은 없어야 하지만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이지만 공무원은 순직으로 처리되고, 무기계약직은 배제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죽음마저 차별 받는 나라는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1.24.

첨부자료 1.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이 름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동위원장 이양진, 이선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806호(양평동3가, 양평동우림 이비지센터)
연락처 : 02-2068-6092

2. 피고발인 (피고발인 명단 별첨)

이 름 : 경기도 고양시 최성 지방자치단체장 외 242명
(전국 광역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발합니다.

4. 위반사실 :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선임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 위반
: 안전관리자 미선임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 위반
: 보건관리자 미선임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 위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1항 위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또는 미게시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1항 5호 위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유인 조사 미실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 고발이유 :

지난 2018.01.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길이 2.5m 쇠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덮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저의 연맹 소속의 민주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16일도에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C(59)씨가 쓰레기수거차에서 잠시 도로에 내린 사이 후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소속의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들에게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기본적인 노동안전에 대한 체계조차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6.12.27. 국회에서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 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토론회도 개최하여, 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공공행정(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노동건강권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을 살피면,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 현업인 경우에는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미화,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지정의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물청소 및 방역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학교급식 → 기관구내식당업

라고 하여,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안전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또한 공공행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현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등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공공행정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건강권을 보장받기위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01.

고발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양진, 이선인 공동위원장 (인)

피고발인 명단

: 경기도 고양시 최성 지방자치단체장 외 242명 (전국 광역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 1 경기도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
- 2 서울특별시
- 3 부산광역시
- 4 대구광역시
- 5 인천광역시
- 6 광주광역시
- 7 대전광역시
- 8 울산광역시
- 9 세종특별자치시장
- 10 경기도지사
- 11 강원도지사
- 12 충청북도지사
- 13 충청남도지사
- 14 전라북도지사
- 15 전라남도지사
- 16 경상북도지사
- 17 경상남도지사
-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9 강원도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장
- 20 강원도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21 강원도 동해시 지방자치단체장
- 22 강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장
- 23 강원도 속초시 지방자치단체장
- 24 강원도 양구군 지방자치단체장
- 25 강원도 양양군 지방자치단체장
- 26 강원도 영월군 지방자치단체장
- 27 강원도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28 강원도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장
- 29 강원도 정선군 지방자치단체장
- 30 강원도 철원군 지방자치단체장
- 31 강원도 춘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32 강원도 태백시 지방자치단체장
- 33 강원도 평창군 지방자치단체장
- 34 강원도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장
- 35 강원도 화천군 지방자치단체장
- 36 강원도 횡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37 경기도 가평군 지방자치단체장
- 38 경기도 과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39 경기도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장
- 40 경기도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41 경기도 구리시 지방자치단체장
- 42 경기도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장
- 43 경기도 김포시 지방자치단체장
- 44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45 경기도 동두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46 경기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47 경기도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장
- 48 경기도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장
- 49 경기도 시흥시 지방자치단체장
- 50 경기도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장
- 51 경기도 안성시 지방자치단체장
- 52 경기도 안양시 지방자치단체장
- 53 경기도 양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54 경기도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 55 경기도 여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56 경기도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장
- 57 경기도 오산시 지방자치단체장
- 58 경기도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장
- 59 경기도 의왕시 지방자치단체장
- 60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장
- 61 경기도 이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62 경기도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63 경기도 평택시 지방자치단체장
- 64 경기도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65 경기도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장
- 66 경기도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장
- 67 경남 거제시 지방자치단체장
- 68 경남 거창군 지방자치단체장
- 69 경남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70 경남 김해시 지방자치단체장
- 71 경남 남해군 지방자치단체장
- 72 경남 밀양시 지방자치단체장
- 73 경남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74 경남 산청군 지방자치단체장
- 75 경남 양산시 지방자치단체장
- 76 경남 의령군 지방자치단체장
- 77 경남 진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78 경남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장
- 79 경남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장
- 80 경남 통영시 지방자치단체장
- 81 경남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장
- 82 경남 함안군 지방자치단체장



83	경남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장
84	경남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장
85	경북	경산시	지방자치단체장
86	경북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장
87	경북	고령군	지방자치단체장
88	경북	구미시	지방자치단체장
89	경북	군위군	지방자치단체장
90	경북	김천시	지방자치단체장
91	경북	문경시	지방자치단체장
92	경북	봉화군	지방자치단체장
93	경북	상주시	지방자치단체장
94	경북	성주군	지방자치단체장
95	경북	안동시	지방자치단체장
96	경북	영덕군	지방자치단체장
97	경북	영양군	지방자치단체장
98	경북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장
99	경북	영천시	지방자치단체장
100	경북	예천군	지방자치단체장
101	경북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장
102	경북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장
103	경북	의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04	경북	청도군	지방자치단체장
105	경북	침송군	지방자치단체장
106	경북	칠곡군	지방자치단체장
107	경북	포항시	지방자치단체장
1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자치단체장
109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10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1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1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자치단체장
116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1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1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자치단체장
120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자치단체장
12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2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자치단체장
125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자치단체장
1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자치단체장
129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30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자치단체장
1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자치단체장
133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34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자치단체장
13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자치단체장
136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3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자치단체장
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단체장
13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자치단체장
140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장
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4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4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자치단체장
1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장
1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자치단체장
14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장
14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자치단체장
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장
15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자치단체장
1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
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장
1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자치단체장
1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자치단체장
1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장
15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장
16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장
1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자치단체장
1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자치단체장
16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장
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자치단체장
165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166	서울특별시	종량구	지방자치단체장
167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168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16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자치단체장
1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장

- 17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 172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방자치단체장
- 17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자치단체장
- 174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자치단체장
- 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자치단체장
- 17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단체장
- 177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자치단체장
- 17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장
- 17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자치단체장
- 180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방자치단체장
- 18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자치단체장
- 182 전남 강진군 지방자치단체장
- 183 전남 고흥군 지방자치단체장
- 184 전남 곡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185 전남 광양시 지방자치단체장
- 186 전남 구례군 지방자치단체장
- 187 전남 나주시 지방자치단체장
- 188 전남 담양군 지방자치단체장
- 189 전남 목포시 지방자치단체장
- 190 전남 무안군 지방자치단체장
- 191 전남 보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192 전남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장
- 193 전남 신안군 지방자치단체장
- 194 전남 여수시 지방자치단체장
- 195 전남 영광군 지방자치단체장
- 196 전남 영암군 지방자치단체장
- 197 전남 완도군 지방자치단체장
- 198 전남 장성군 지방자치단체장
- 199 전남 장흥군 지방자치단체장
- 200 전남 진도군 지방자치단체장
- 201 전남 함평군 지방자치단체장
- 202 전남 해남군 지방자치단체장
- 203 전남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장
- 204 전북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
- 205 전북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장
- 206 전북 김제시 지방자치단체장
- 207 전북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장
- 208 전북 무주군 지방자치단체장
- 209 전북 부안군 지방자치단체장
- 210 전북 순창군 지방자치단체장
- 211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단체장
- 212 전북 익산시 지방자치단체장
- 213 전북 임실군 지방자치단체장
- 214 전북 장수군 지방자치단체장

215	전북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16	전북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장
217	전북	진안군	지방자치단체장
218	충남	계룡시	지방자치단체장
219	충남	공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20	충남	금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21	충남	논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2	충남	당진시	지방자치단체장
223	충남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장
224	충남	부여군	지방자치단체장
225	충남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6	충남	서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27	충남	아산시	지방자치단체장
228	충남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29	충남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장
230	충남	청양군	지방자치단체장
231	충남	태안군	지방자치단체장
232	충남	홍성군	지방자치단체장
233	충북	괴산군	지방자치단체장
234	충북	단양군	지방자치단체장
235	충북	보은군	지방자치단체장
236	충북	영동군	지방자치단체장
237	충북	옥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38	충북	음성군	지방자치단체장
239	충북	제천시	지방자치단체장
240	충북	증평군	지방자치단체장
241	충북	진천군	지방자치단체장
242	충북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장
243	충북	충주시	지방자치단체장

첨부자료2. 2010년 노동부장관상/민간위탁 폐지/일본안전작업수순 일부

<p style="text-align: center;">  제2010-122호 상 장 <small>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small> 대 상 위는 2010년도 「민간단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임태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보도:KBS,MBC,SBS,CBS 등 중앙방송사, 티브로드,OBS,YBS등 지방 방송사, 한겨레,경향,한국,조선 등 중앙언론 및 인터넷언론, 경기,강원,충청, 전라등 주요 지방언론 등 총 88여회 이상 보도(6.30.기준) ▲선전물 배포 : 전국 20만부 이상 서명 : 약 6,000명 이상 서명 지역기자회견: 전국 105회 진행 ▲주요정당입장: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중앙당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씻을권리’ 찬성 입장(공문) ▲지방선거 후보 공개질의: 130여명 의 지방자치단체 후보 찬성 답변
---	---

< 개정안 >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시설, 갱의 또는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척시설 등에 관한 보건규칙 개정 방안(노동부)

첨부자료3. 2011년 청소차 개선사업/ 일본 청소차 사진

환경미화원의 몸에는 박테리아 26만개!

조사대상	검출된 미생물수(평균) CFU/10cm ²	조사기관	조사년도
타이플 화장실 변기	3800	서울대학교	2007년
아파트 소변기	1100	신서지보호원	2006년
pc로 컴퓨터 마우스	690	신서지보호원	2006년
버스 손잡이	380	신서지보호원	2006년
휴대폰 글 손잡이	340	신서지보호원	2006년
콜라병 뚜껑	130	신서지보호원	2006년
자동차 손잡이	86	신서지보호원	2006년

환경미화원 몸에서
검출된 미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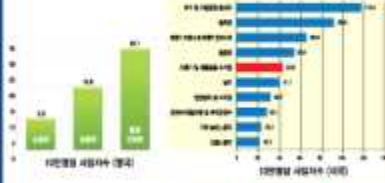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77%가 일이 끝나면 샤워조차 하지 못하고 퇴근
87%는 일하의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퇴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이래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죽어간다. 아무도 모르게!



환경미화원 사망률 : 소방관의 3배 경찰관의 2배

미국 청소회사 차량 정비불량률 : 평균 25% 이상

미국 유명 택배회사 차량 정비불량률 : 평균 7.5%

택배차량보다 정비불량이 많은 차량 청소차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 0.7%

자치단체직영 환경미화원 재해율 6.9%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 재해율 16.8%

(2009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

평균 재해율의 10배가 넘는 환경미화원의 사망, 사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래도 민간위탁 하겠습니까?

필연적 예산상피

다행일제 이유보상으로 세균농도 발생
원가예산에서부터 일관관리비 5% + 미운 10% 선정

가중치는 쓰레기(물류) 경제도 세균농도 리스크

→ 세균농도 증가 재차구 쓰이기 병행 위해 수급 11명씩 대량구 세균으로 한 집에

부담된 방법으로 인한 비용도 세균농도

편하게 계약물자 / 비용산출 근거의 임의해석에 따른 대형통기 고다
계산 / 심형 / 기차 미확인 등세 미확인 일관 관리 등 같은 수입 동원

환경미화원 임금급취와 고용불안

원가상계와 다른 0.8만 임금 지급

민간위탁 및 재계약으로 인한 세고, 이불 밀리므로 한 한양

결정되는 민간위탁 A로로 고용불안 추경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늘어

사망자만 커녕 수도까지 하나 없는 곳이 흔합니다.

후계사로 바르는 컨테이너 박스가 대량만

일급은 낮고, 휴일도 거의 없는 중노동 성채 사용

작업은물러내, 피로 심화 → 사고 발생 증가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 재해율은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의 10배

⇒ 모든 피해는 시민들의 몫!!

2011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력사업 최종보고서

I. 일반항목

기관명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표자명	이광희
주 소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0-16 동원빌딩 6층	전화번호	02-2068-6090	Fax	091-826-8723
사업명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안전기준 실태조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금	60,000,0000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법 제3조)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여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된 부분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012.7.30)

○ 다만, 공공행정에 보조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행정업무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며

-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공행정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 현업인 경우에는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미화,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지정외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물청소 및 방역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학교급식 → 기관구내식당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수된 업무를 도급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수급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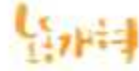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방역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판단

확대한 야망,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1부,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지방관서(산재예방지도과)

전무취임

서기관

산재예방정책 신임 2017. 2. 3.
과장

합조자

시행 산재예방정책과-626

경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694 팩스번호 044-202-8090 / saestarkim@korea.kr / 비공개(5)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이 일어납니다.

○ 다만, 공공행정에 보조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행정업무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며

-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공행정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항이 아닌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 현업인 경우에는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미화,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지정외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물청소 및 방역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학교급식 → 기관구내식당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수된 업무를 도급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수급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방역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판단